

세 부 지 침 서(시방서)

1. 사 업 명

2026년 벼 병해충 본답방제(항공방제) 약제 구입(2차)

2. 적용범위

본 세부지침서(시방서)는 금성면에서 시행하는 벼 병해충 본답방제(항공방제) 약제 구매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.

3. 대상병해충

- 벼 병해충 본답방제는 다음의 병균과 병충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 - 병 : 잎(목)도열병, 세균성벼알마름병, 흰잎마름병 등
 - 충 : 애벌레, 벼물바구미, 벼잎벌레 등

4. 구입내역 및 수량

유효성분	규격	단위	수량	단가(원)	금액
계					36,000,000
아족시스트로빈 12%, 헥시코나졸 1% (클릭/팜한농)	500ml	병	480	40,000	19,200,000
에토펜프록스 18%, 인독사카브 1.5% (청출어람/동방아그로)	2L	병	240	70,000	16,800,000

5. 납품조건

-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농약 납품 전에 해당부서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.
 - ※ 낙찰 즉시 면으로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후 납품 협의
- 구매농약은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'2026 작물보호제 지침서'에 수록된 상표의 사양과 같아야 한다.
- 농약성분 기준은 4번 표의 유효성분기준과 같으며, 농촌진흥청 농약관리시스템 (<http://psis.rda.go.kr/>)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.

- 낙찰업체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공급수행을 위한 공급 계획서 등의 서류를 금성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낙찰업체는 납품장소까지 운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.
 - 낙찰업체는 본답방제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자가 선정한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.
 - 구매농약은 운송 중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파손 시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.
- 2026년 1월 이후 생산된 약제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. 후에라도 제품의 하자 발생(건) 시 해당 제품 전량 교체와 미달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물품 교체비용과 농가피해 배상은 계약업체가 직접 보상한다.
 - 납품서 제출 시 배상책임 보험증서 첨부
 - 사용지도 및 피해보상 책임 구매공급계약서에 명시
- 본 지방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법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성면의 의견을 따른다.
-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례에 따른다.

6. 농약업체의 사업 참여제한

- 주성분 기타 규격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
- 유해성분 초과로 영업정지 받은 업체
- 주성분, 유해성분 등의 중복위반업체
- 품질관련 농업인 피해발생업체

- ## 7. 납품기한 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성면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조치 할 수 있다.
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.
 - 금성면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.

8. 납품장소 : 하동군 금성면에서 지정한 장소

- ## 9. 보고서 작성 : 금성면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제농약을 공급하고 금성면 담당자와 공급업체 담당자와 함께 검수한 후 공급업체는 공급결과(수령증)를 정리하여 금성면에 제출한다.

- 납품서 및 세금계산서
- 제조사의 공급확인서 등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(사본) 및 대금 입금 통장(사본)
- 납품인수증
- 납품사진 (3" × 5") : 납품 중 · 후 사진 각 1매 (금성면이 지정하는 장소)

10. 지연배상금

- 낙찰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1,000분의 1.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금성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, 계약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.(단, 금성면의 사정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해당일수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)

11. 기타사항

- 본 지방서 어구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, 법규에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견은 담당부서(금성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)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.
-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담당부서(금성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)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.